

<p>市의 再開發區域이 上溪洞뿐 아니라 곳곳에 널리 많이 再開發이 지금 속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거기에 이 投機가 없다는 것은, 金炳植委員님 地域은 그런지는 몰라도 本委員이 느껴 본 바에 의하면 이 再開發地域에 投機가 없다고 누가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.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이 만큼 혜택 준 것만 해도 저는 다행이 아닌가, 왜 投機가 벌어지느냐 하면 물론 어려운 庶民層이 사는데, 참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때를 잘못 만나서 집 한 칸 못 마련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. 그런데 그 地域에는 無爲徒食하는 者가 끼어들게 마련입니다. 그 無爲徒食者가 몇 %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들이 어디선가 再開發한다면 끼어들어서 꼭 말썽을 일으키게 마련입니다.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은 정말 實需要者가 못보고 엉뚱하게도 無爲徒食하는 者만 혜택을 보고, 또 다른 대로 도망가는 이러한 일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執行部의 原案을 同意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</p> <p>이상입니다.</p> <p>○委員長 李聲九 그러면 金炳植委員님은 修正動議를 하자는 얘기입니까?</p> <p>○金炳植委員 네, 그렇습니다.</p> <p>○委員長 李聲九 그럼 이렇게 處理를 하겠습니다.</p> <p>金炳植委員의 再開發 區域안에 있는 土地를 再開發施行 認可 당시와 그 후에同一하게 10年 分割 年 5% 利子로 하자는 修正動議案이 提案되었습니다.</p> <p>再請 있으십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金委員님, 이 問題는 다음에 좀더 研究해서 새로 한 번 다루시기로 하고, 일단 오늘은 再請이 없으므로 일단 議題로 成立이 안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.</p> <p>○金炳植委員 좋습니다. 多數可決의 原則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…… 저는 市民들을 代辯했을 뿐이지 제가 여기서 혼자 이길 수 있습니까?</p>	<p>○委員長 李聲九 더 質問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더 이상 質問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면 第6項에 대한 質疑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그러면 議事日程 第6項 서울特別市公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异議 없습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.....</p> <p>(參 照)</p> <p>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22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할 때</li> <li>2.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교육청에 매각할 때</li> <li>3.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·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</li> </ol> <p>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</p>
--	--

(第12回—財務經濟第4次)

다음 각호와 같다.	國家와 地方自治團體 間 相互 占有財產 交換 一環으로 國有地와 市有地를 交換하고 있
1. 영 제95조제2항제8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	습니다. 그런데 이는 자칫 잘못하면 곧 있을 民選 基礎自治團體長과 廣域團體長이 그
2. 제39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	地方 財產을 簡便히 잘못 處理할 수 있다는
3.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, 연립주택,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	이 우려에서 몇 가지를 質問하고자 합니다.
③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	大統領警護室에서 駐車場으로 占有 使用하고 있는 市有地 718坪과 우리 市가 무궁화동산造成敷地로 使用하고 있는 國有地 517坪을
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.	相互 交換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200坪 差異가 있지요?
1. 영 제95조제2항제2호·제6호·제10호·제11호·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	O財務局長 孫長鎬 네, 그렇습니다.
2.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게 매각할 때	O鄭興鎮委員 그럼 價格差異가 상당히 많이 날텐데…….
3. 시장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시장이 계속하여 점유·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 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할 때	O財務局長 孫長鎬 價格은 鑑定해서 精算을 합니다.
4.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	O鄭興鎮委員 差額을…….
부 칙	O財務局長 孫長鎬 差額을 精算합니다.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O鄭興鎮委員 그럼 당연히 해야지요. 그것을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, 差額이 얼마인가?
②(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제1항·제2항·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매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.	O財務局長 孫長鎬 이것은 承認이 난 이후에 저희가 鑑定節次를 밟습니다. 밟으면 그 때 가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.
.....	O鄭興鎮委員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.
.....	O財務局長 孫長鎬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
.....	O鄭興鎮委員 다음은 대신고등학교 안에 소지하고 있는 82坪을 占有者인 대신고등학교에 賣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럼 그 동안에 占用料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?
.....	O財務局長 孫長鎬 이것은 議案이 좀 다릅니다만, 占用料 賦課를 다 하고 있습니다.
.....	O鄭興鎮委員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?
.....	O財產管理課長 權赫模 그 資料는 현재 안 가지고 있는데요, 賦課하고 徵收를 다 했습니다. 別途로 報告해 드리겠습니다.
.....	O鄭興鎮委員 별도로 報告해 주시기 바라고,
.....	지금 無償使用 許可對象이 1件인데 鍾路區都梁洞 95-1 垦地 345坪, 建物 325坪을 서울
.....	地方警察廳에 無償貸付하려는 것인데 이것이 소위 말하자면 금싸라기 땅입니다. 그리고 아까 冒頭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地方……. 鍾
.....	